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2008. 5. 26.)에 따라 변경된 장애 관련 용어 등을 이와 연관된 법령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전의 용어와 폐지된 법률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장애 관련 용어 및 법률명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현행화함

가.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수정(안 제69조제2항제1호, 제83조제3항, 제87조제2항과 제3항)

나.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안 제89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체장애인

제83조제2항 단서 중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부자유자의 범위와 지체부자유자의”를 “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지체부자유자중”을 “지체장애인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를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생략)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u>1. 지체부자유자</u> 2. (생략) ③ (생략)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1. 지체장애인</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 (생략)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에 의하되, 체육교과에 대하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u>지체부자유자</u> 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u>지체부자유자의 범위와 지체부자유자의</u> 체육교과평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지체장애인</u> ----- ----- -----. ③----- <u>지체장애인의 범위와 지체장애인</u> ----- -----.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

정) ① (생 략)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u>지체부자유자중</u>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지체부자유자의</u>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u>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체장애인 중</u> ----- ----- ----- ----- -----. ③----- ----- --- <u>지체장애인</u>----- -----.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u> ----- ----- ----- ---. ④·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63